

심문재개신청서

사 건 2026카합20328 소스코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
 채권자 주식회사 알파피플
 채무자 주식회사 데브올컴퍼니

위 사건에 관하여 위원은 2026. 4. 1. 심문을 종결하였으나,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문재개 및 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채무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인 부산 연제구 연제로 30, 105동 오피스 7, 8, 9층-9021호(연산동, 시청역 비스타 동원)는 주식회사 남양종합개발이 운영하는 ‘드림워크(www.dreamwork.co)’ 공유 오피스 주소지인데, 채무자는 사업자등록 주소만 필요하여 보증금 30만원,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‘비상주 오피스’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(참고자료 드림워크 홈페이지 화면 참조).
2. 이에 위원이 발송한 이 사건 신청서 부분, 심문기일 통지서 및 답변서 제출명령이 2026. 3. 9.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지만, 실제 채무자 직원이 송달받은 것이 아니라 드림워크 관계자(직원)가 송달받았습니다.
 채무자의 전체 직원 5명은 서울에 상주하고 있고(채권자도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으므로, 채무자의 직원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),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2026. 4. 21. 다른 업무차 부산에 방문하였다가 등기부상 부산 본점 소재지에 들리게 되어 위원이 발송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, 이미 심문기일이 진행되고 종결까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

- 3. 채무자는 다음 날인 2026. 4. 22.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바, 채무자에게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심문을 재개하고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.
- 4.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,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

첨 부 서 류

- 1. 참고자료 1 드림워크 홈페이지 화면
- 1. 참고자료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

2026. 4. 23.

채무자 소송대리인 **법무법인 변화**
 담당변호사 문강석, 이상훈, 함진우

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(다) 귀중